

의안번호	2218947
의 회 인	구자근 의원
회 답 일	2026. 8. 18.
추계번호	26A2636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제2항 신설 (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(제2항) －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(이하 “비수도권 지역”이라 한다)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 － 2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－ 3. 비수도권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육성 방안 － 4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－ 5. 그 밖에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4조의2 신설 (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촉진)	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－ 2. 비수도권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○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 ○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4조제2항 신설 (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조의2 신설 (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촉진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, 중소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②비수도권 지역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 소재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③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(안 제4조제2항)
 1.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(이하 “비수도권 지역”이라 함)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의 조사·분석에 관한 사항
 2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 3. 비수도권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의 육성 방안
 4.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
 5. 그 밖에 지역 균형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개정안의 시행으로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의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, 비수도권 지역 소재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의 지방자치

단체 공동 추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
- 개정안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명-내역사업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벤처캐피탈선진화- 지역엔젤투자허브 운영 (일반회계, 5231-302)	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 해소 및 지역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구축·운영	1,440
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(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, 5264-301)	(지역성장펀드) 모태펀드, 지방정부, 민간 등과 지역 벤처모펀드를 공동 조성하여,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	260,000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,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 공동 추진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·시행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고,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 공동 추진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규모가 증액될 것이라는 전제하에, 확대 또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하나,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내용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
- 또한, 개정안에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창업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기준·방법 및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의 공동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의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